

##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47
----------	-----

제출년월일 : 2000년 10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법규를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 완화조치 등으로 과징금 처분대상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 조례에 의한 지속적인 기금운용은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진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 폐지

3. 조 례 안 : 별 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5. 근 거 : 기금운용 통합관리 추진 검토결과

##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조례 제2421호 1998. 11. 2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과징금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운용통합관리 추진 검토결과

- 기금운용의 구조적 경직성을 탈피하고 기능적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기금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 기금운용 통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국별로 검토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한 결과임.

### □ 추진경위

- 2000. 3. 30 기금운용 통합관리 추진계획 시달(예산담당관실)
- 2000. 4. 6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통·폐합에 따른 의견제출(교통도로과)
- 2000. 5. 24 기금운용 통·폐합에 따른 조례정비 추진(예산담당관실)

### □ 추진방침

- 동일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동되고 있는 기금을 우선 먼저 통합하고 목적달성한 기금도 폐지하도록 유도

### □ 검토결과

- 기금명 :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 조례안 : 폐지
- 결과
  - 관계법의 개정 및 행정규제 완화조치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감소에 따라 과징금 징수액보다 지출액이 과다하여
  - 조례에 의한 지속적인 운용은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진하므로 조례폐지후 일반회계에서 운용